

품목분류
CASE 5 배터리·충전기 세트

판정번호
H342925

물품 정보

용도

- 전동공구(드릴, 톱 등)의 전기 공급을 위한 배터리·충전기 세트

구조

- 배터리와 충전기로 구성
 - ① 배터리: 전용 전동공구 전기 공급
 - ② 충전기: 세트의 배터리 전용

쟁점 HS



제 8504 호

변압기·정지형 변환기

제 8507 호

충전기

신청인 주장

- 세트의 본질적 특성은 전기를 저장하는 배터리에 있음
- 소비자는 쟁점물품을 배터리의 기능을 보고 구매
- 세트 전체 가치 중 배터리가 약 63%를 차지

쟁점물품은 배터리가 분류되는 제8507호 주장

CBP 판단

- 배터리는 전용 충전기를 통해서만 충전 가능(충전기가 없다면 재사용 불가)
- 일반적으로 충전기는 배터리보다 내구성이 높음
- 소비자의 구매 동기는 충전기를 통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에 있음

배터리가 아닌, 충전기가 본질적 특성을 부여

미국 HS-CODE 결정

8504.40

정지형 변환기